

kiri Weekly

2012.2.13 제169호

이슈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포커스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국내금융 뉴스

금감원, 2011년 퇴직연금시장 현황 발표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실업률,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유럽 _ 그리스, 긴축(안) 최종합의로 디폴트 위기 모면

_ 유럽은행, 기업 지급불능위험으로 대출 기피

_ EU, 그리스 구제자금 특별계좌 신설 검토

일본 _ 2011년 일본 경상수지 흑자 15년 만에 최저치 갱신

중국 _ 시티그룹, 중국 내 신용카드 발급자격 취득

_ 독일 총리 중국 방문 후, 중국의 유럽지원 가능성 부각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살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전염병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의 전화, 알코올 상담 등 대부분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는 고용,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인이 거시적 변수들이어서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조정은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추이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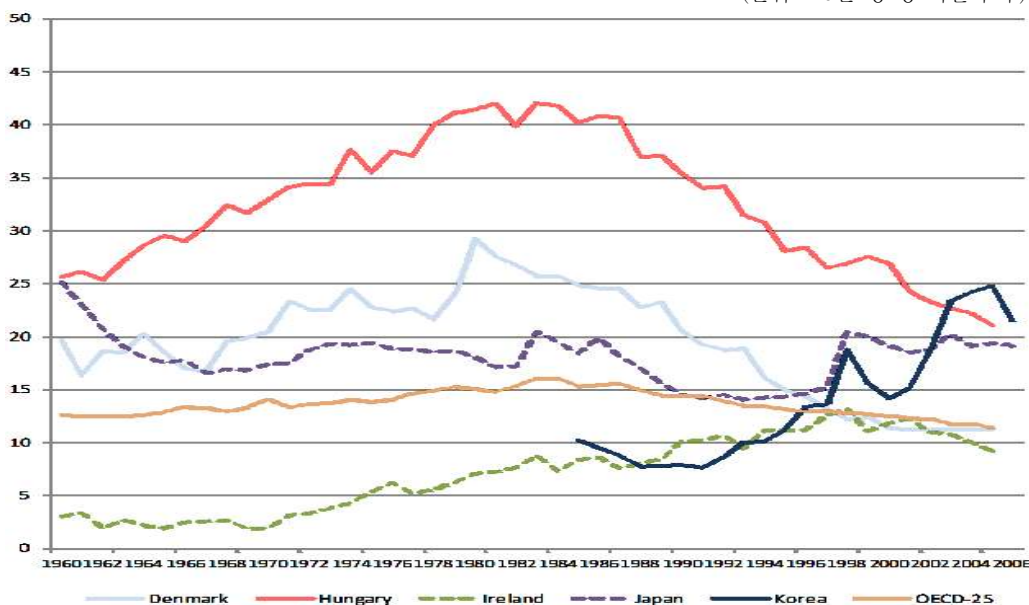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몇 년간 학교 폭력에 의한 청소년 자살, 우울증 등에 의한 자살, 노년 자살,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 각계각층에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살이 사회적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¹⁾로 인식되고 있음.
 -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자살은 감소 중이지만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만 증가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OECD 국가의 자살률 추이

(단위: 10만 명 당 자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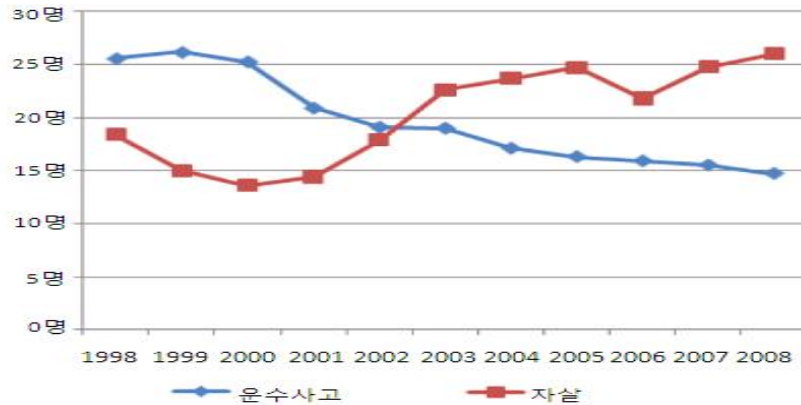
자료: OECD(2011), <http://lysander.sourceoecd.org/vl=90058060/cl=11/nw=1/psv/societyatglance2009/08/04/index.htm>.

1) 보건복지부(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중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아 사회적 심각성이 높음(<그림 2> 참조).

<그림 2> 인구 10만 명당 운수사고와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변화 추이 비교: 1998~2008

(단위: 10만 명당 자살자 수)



자료: 강은정 · 이수형(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고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²⁾으로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함.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조항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동 가입자의 자살동기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면책기간이 짧아 면책기간에 따른 자살동기 억제효과는 실제 크지 않음.
- 생명보험의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다면 면책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자살의 정의



■ 정신적 기능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함.

2)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살을 염두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생명보험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에서 적용되는 자살 개념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표 1〉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구분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제외
한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정신장애자 및 심신상실자의 자살,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자살
독일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민법상의 책임능력 있는 피보험자의 모든 행위	미필적 고의, 사형집행, 중과실에 의한 자살
영국/ 미국	도덕적, 법적 결과에 대한 의식은 없으나, 물리적 결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프랑스	자기의 명예, 재산, 건강과 관련하여 중대한 심리적인 악화로 인해 고의로 자기 자신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자신의 행동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이고 고의 없는 자살
일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	과실에 의한 자살, 정신장애자의 자살

자료: 김형기·김광호(2004),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연구보고서, p. 11.

3.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조항



■ 「상법」과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상법」 제659조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함.
- 그러나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면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은 면책임.
- 단, 계약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함.

■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³⁾

- 자살행위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점
- 자살행위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선의의 의무(Duty of Utmost Good Faith)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자살을 감행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점
- 피보험자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보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관적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 생명보험이 자살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 한편,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함.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면책기간 조항이 없는 한편, 벨기에, 그리스 등은 종전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살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1990년대 중후반부터 면책기간이 설정됨.
- 일본의 경우 면책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근 들어 3년으로 연장됨.

〈표 2〉 각국의 자살면책기간

(단위: 년)

국가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법규정
벨기에	∞	∞	∞	1	1	1	존재
스웨덴	0	0	0	0	0	0	없음
덴마크	0	0	0	0	0	0	없음
독일	3	3	3	3	3	3	존재
그리스	∞	∞	∞	∞	2	2	존재
일본	1	1	1	1	2	3	존재
미국	주마다 상이함(33개주: 2년, 2개주:1년, 나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호주	1	1	1	1	1	1	없음
한국	2	2	2	2	2	2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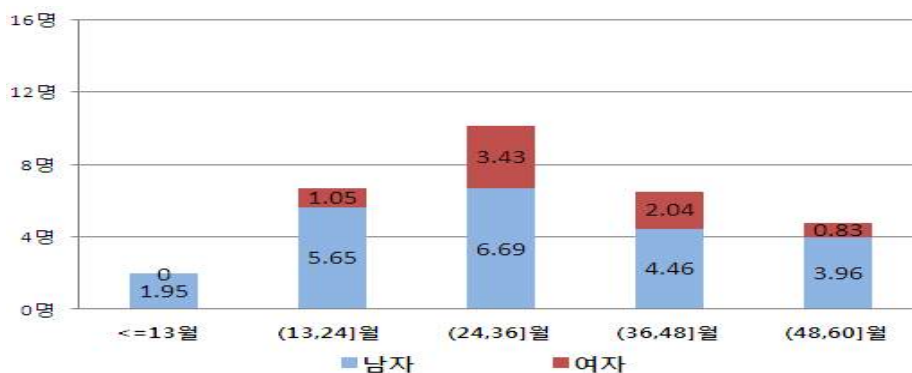
자료: Chen, J., YJ. Choi, and Y. Sawada(2008), 「Suicide and Life Insurance」, 『CIRJE Discussion Paper』, p. 17.

3) 김형기·김광호(2004),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연구보고서, p. 7.

4.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의 지급이 자살을 유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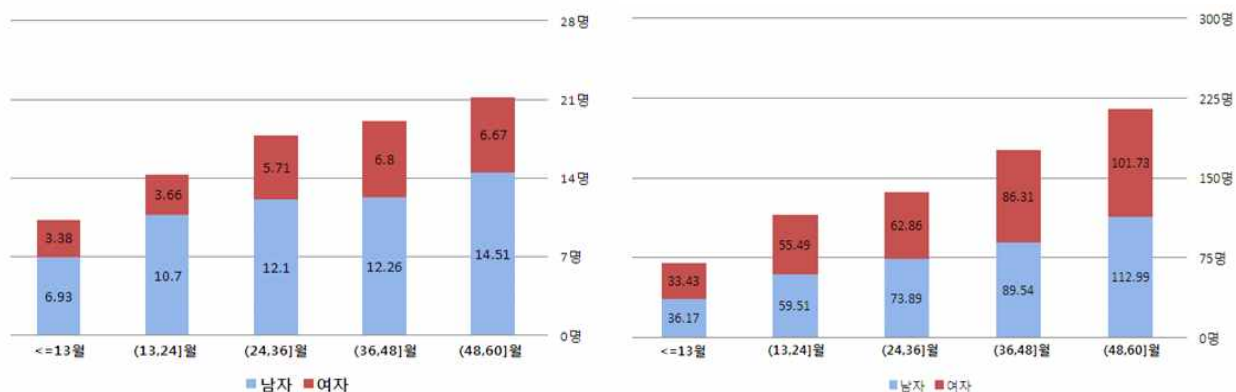
-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생명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⁴⁾에서는 면책기간 이후 자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10만 명당 사고 및 자연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자살자 수는 면책기간(1년) 직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년 후 최고점에 이르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보험가입기간(월)에 따른 10만 명당 자살자 수



자료: Yip P. et al.(2010), 「Assessing the impact of suicide exclusion periods on life insurance」, Crisis, 31(4).

〈그림 4〉 오세아니아 보험가입기간(월)에 따른 10만 명당 사고 및 자연사망자 수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10만 명당 자연사망자 수



자료: Yip P. et al.(2010), 「Assessing the impact of suicide exclusion periods on life insurance」, Crisis, 31(4).

4) Yip P. et al. "Assessing the impact of suicide exclusion periods on life insurance", Crisis, 31(4), 2010

■ 미국의 생명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면책기간 직후 자살률이 최고점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 보험가입자의 자연사망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기간(2년) 전후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형태를 나타냄.

〈그림 5〉 미국의 보험가입 후 시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살률과 보험가입자의 자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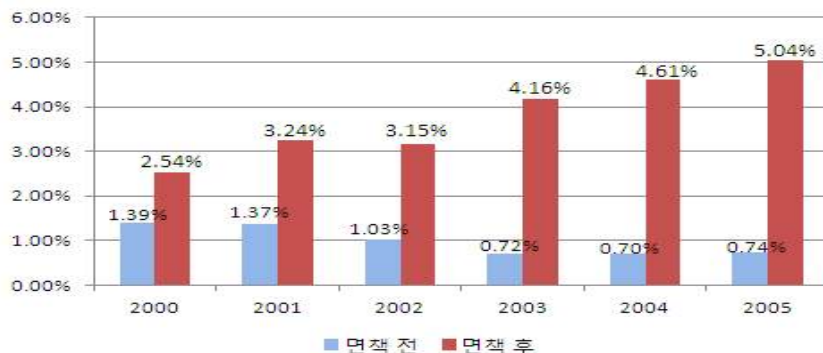


주: 자살률 = 자살로 발생하는 보장금액 / USD 100,000
 자료: Tseng(2004), 「The effect of life insurance policy provisions on suicide rates」, University of Chicago, Ph. D. Dissertation.

■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기간 후 사망자 대비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기간 전후⁵⁾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6〉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변화



주: 자살률 =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자 수 / 생명보험 가입 후 사망자 수.
 자료: 이경룡·김사영(2007),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5) 참고로 면책기간 전(생명보험 가입 후 0~2년)과 면책기간 후(생명보험 가입 후 2년~∞년)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해석에 유의 바람.

5. 시사점



-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자살이 반드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도의 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자살예방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자살예방의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보험 관련 자살에 대해 면책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자살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추이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 유인 확률이 높을 수 있음.
-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 조정과 더불어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가입적격심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가입적격심사는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에 대한 사전적 배제를 통해 개인의 자살의도를 제거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풍부한 생명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면책기간 조정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명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들은 주로 생명보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면책기간 전후 추이를 단순히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자살에 대한 자살면책기간 조정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정신 및 소득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kiri**